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WHO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기본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 운영 사항(안 제3조 ~ 제7조)

다.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기업 지원사항(안 제8조)

- 인증심사에 사용되는 비용 중 신청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우대업체로 선정

라.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제12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은 관련분야 공무원, 인증 관련 민간전문가, 인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관 관련기관 내 담당자
- 기타 건강한 일터 인증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의 해촉

- 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필요경비 지급

3. 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한 일터 인증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일터 인증제”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사업장 중 물리적 작업환경과 개인건강자원 2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을 건강한 일터로 인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나비(Navi)”란 제1호에 따른 건강한 일터 인증제명을 말한다.
3. “물리적 작업환경”이란 사업장의 재료, 공정, 구조, 공기, 기계, 가구, 소음, 조명, 화학적·전기적 위험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등 사업장의 부분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환경 및 조건을 말한다.
4. “개인건강자원”이란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활습관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건강서비스, 정보, 자원, 기회 및 유연성 지지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건강한 일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인증제 신청 및 절차) 건강한 일터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물리적 작업환경 영역과 개인건강자원 영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리적 작업환경영역 충족 서류: 국내 및 다국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 18001, K-OHSMS 18001, OHSAS 18001등)을 받은 증빙서류
2. 개인건강자원 영역 충족 서류: 사업장 자체 건강관리계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사업 또는 구미시가 추진하는 건강증진 관련 참여 실적, 기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계획 등

제5조(건강한 일터 인증) ① 시장은 물리적 작업환경 영역과 개인건강자원 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 일터 나비를 인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사전에 공고한다.

제6조(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효기간 중으로 한다.

제7조 (건강한 일터 조성 촉진 및 참여확산) ① 시장은 건강한 일터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건강한 일터 인증제 홍보
2. 건강한 일터에 대한 컨설팅

3.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장 교육

4. 그 밖에 건강한 일터 인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서를 수여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인증심사에 사용되는 비용 중 신청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2.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운전 자금 지원 시 우대업체로 선정

3. 기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제9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증제를 추진하고 인증 심사를 위하여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관련분야 공무원

2. 인증 관련 민간전문가

3. 인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관 관련기관 내 담당자

4. 기타 건강한 일터 인증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④ 위원장은 인증 결정 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직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 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본 사		
	사 업 장		
법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설 립 연 월 일		업 종	
홈 페 이 지		상 시 종 업 원 수	명(남 명, 여 명)
주 생 산 품			
건강한 일터 나비 인증지원 담당자			
성 명		부 서 및 직 위	
TEL		e-mail	
핸 드 폰		팩 스	
위와 같이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본1부 2. 사업장 건강관리 계획서 3. 건강한 일터 자체수준 평가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